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장미경 의원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장미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장미경 의원(1인)

찬 성 자: 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
김재우·김정도·박세채·이명희
이상호·이정희·이지연·추은희
허민근 의원(13인)

1.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및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1조의2, 제66조의4

2)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33조의2, 제33조의4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 24조의3

나. 부서검토: 안전재난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냉난방비 지급, 냉난방 장비 수선 등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2.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3. 폭염·한파 예방 및 피해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냉난방 물품 보급 사업
2. 냉난방비 지급
3. 피해 예방·지원 관련 건강 지원 사업
4. 건강보건 전문 인력, 통리장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 재난도우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4호 관련)

구분	정 의
쿨루프	태양광선을 반사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태양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료를 지붕 또는 옥상에 시공하여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쿨링포그 시스템	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열성 도로포장	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그늘목	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및 나무식재 등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 나무그늘	여름철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말한다.
수경시설	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스마트 승강장	냉·온열의자, 냉난방시스템, 공기정화살균기, 정류장 안내단말기, 핸드폰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말한다.
버스승강장 방풍시설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외부를 감싸는 투명 재질의 가림막 시설을 말한다.
기타시설	상기의 시설물 외에 폭염 및 한파 피해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 다. (생략)

2. (생략)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 4의2. (생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생략)

5의2. ~ 9. (생략)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 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 13. (생략)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 9. (생략)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략)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가축·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한파로 인한 농작물·가축·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안전재난과

조 례 명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주요 사항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예방·지원 사업,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협력관계 구축(안 제7조)

□ 검토 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법령 근거에 따라 제정·운영될 수 있으며, 폭염 및 한파 대응을 위한 시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및 한파의 빈도와 강도 증가에 따라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 및 제6조: 예방·지원 사업,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사업의 범위, 대상자 수, 물품 단가, 설치 수량 등 구체적 예산 산정 전제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 시행 여부와 규모 역시 향후 행정계획과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선언적·권고적 성격의 내용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오제광(☎054-480-6742)